

친권상실 심판청구

청구인 박 ○ ○

1900년 0월 0일생

등록기준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(우편번호)

전화 000 - 0000

피청구인 △ △ △

1900년 0월 0일생

등록기준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주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000 - 0000

사건본인 1. 박 □ □

19○○년 ○월 ○일생

등록기준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주소 00시 00구 00길 00

전화 000 - 0000

2. 박 🗆

1900년 0월 0일생

등록기준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주소 00시 00구 00길 00

전화 000 - 0000

친권상실 심판청구

청 구 취 지



- 1. 피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각 친권을 상실한다.
- 2. 사건본인들의 후견인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 박ㅇㅇ을 선임한다.
- 3.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피청구인 △△△는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망 ◇◇◇와 혼인을 하여 사건본인들을 낳고서 살던 중 20○○. ○. ○.경 위 ◇◇◇>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자 다른 남자와 같이 가출하여 버리고 사건본인들만 남겨 두었습니다. 그래서 청구인 내외가 사건본인들을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.
- 2. 한편 청구인이 손자들을 위하여 교육보험을 든 것이 있었는데, 보험회사에서 초등학교, 중학교 입학축하금이 나오자 피청구인이 임의로 이를 수령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 박□□ 명의로 되어 있던 교육 보험에서 나온 보험금도 피청구인이 수령하여 가져가 버렸습니다.
- 3.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내외가 손자들을 키우고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교육비 등을 보태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으로 나온 교육비를 가로채는 등으로 전혀 사건본인들의 양육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.
 - 이에 화가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피청구인에게 키우라면서 보냈으나, 위 피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지 않고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소재 '○○의 집'이라는 고아원에 보내어 버렸습니다.
 -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청구인이 고아원으로 가서 사건본인들을 데려와서 다시 양육을 하게된 사실도 있었습니다.
- 4. 또한 사건본인 박□□이 20○○. ○. 교통사고를 당하여 ○○병원에 입원하 게 되었는데, 피청구인은 병원으로 와서 간호도 전혀 하지 않고 애통해 하기는 커녕 피청구인이 호적상 그대로 남아있고, 위 박□□의 모이므로 법정대리권이 있다는 이유로 배상금으로 나온 170만원을 몰래 수령하여 가버렸습니다.
- 5. 또한 피청구인은 혼인할 당시부터 낭비벽이 심하였으며, 자녀인 사건본인들의 양육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, 오히려 보험금이나 보상금 등을 가로 채는 등으로 여전히 친권자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지위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

인 것입니다.

6. 결국 피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을 아니라.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현저한 비행으로 인하여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계속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.

또한 보험금이나 보상금 등을 임의로 수령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버리 는 등으로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사건본인들의 재산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.

- 7. 한편 피청구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, 법률행위대리권, 재산관리권을 상실 할 경우 여태껏 사건본인들을 양육해온 청구인이 후견인이 되어 그 권리를 행 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.
- 8. 따라서 사건본인의 조부인 청구인은 청구취지와 같이 피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,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를 구하고 청구인이 사건 본인들의 후견인으로 선임되고자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1. 갑 제2호증

1. 갑 제3호증의 1, 2

기본증명서(망 \bigg 🚞

가족관계증명서(망 ◇◇◇◇)

각 주민등록등본

1. 갑 제4호증의 1, 2 각 진술서 및 인감증명서

첨 부 서 류

1. 위 각 증거

각 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납부서

1통

2000년 0월 0일 위 청구인 박 ○ ○ (인)

○ ○ 지 방 법 원 귀중

			₩ 대한법量구조공E
제출법원	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		
청구권자	·민법 제777조의 친족 또는 검사 (민법 제924조)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법 제924조, 가사소송법 제46조
불복절차 및 기간	·즉시항고(가사소송규칙 제103조) ·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내(가소소송규칙 제31조)		
비 용	・인지액: 사건본인수×10,000원(□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・송달료: 당자사수× 000원(1회송달료) ×12회분		
요 건	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(민법 제924조)		